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5-000호

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고시(제외)
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63호(2004.07.02), 제2005-65호(2005.03.26), 제2005-106호(2005.05.13), 제2005-176호(2005.06.28), 제2006-235호(2006.07.04), 제2007-96호(2007.03.23), 제2007-250호(2007.07.02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61호(2008.05.23), 제2008-457호(2008.08.12.), 제2009-29호(2009.01.21.), 제2009-108호(2009.03.10), 제2009-398호(2009.06.24), 제2009-544호(2009.08.11), 제2012-53호(2012.02.14), 제2012-775호(2012.11.15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73호(2015.08.12.), 제2018-122호(2018.02.27.), 제2019-542호(2019.10.08.), 제2019-1001호(2020.01.03.), 제2020-526호(2020.07.24.), 제2020-964호(2020.12.18.), 제2021-995호(2021.08.03.), 제2021-1120호(2021.09.29.), 제2021-1319호(2021.12.08.), 제2022-434호(2022.08.01.), 제2022-505호(2022.09.06.), 제2023-176호(2023.03.31.)로 고시된 서울~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중복구간, 사유지구간 제외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, 「도로법」 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0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①구분	②종류	③노선번호	④노선명	⑤위치	⑥면적 (㎡)	⑦기점	⑧종점	⑨주요통과지	⑩총연장 (km)
당초	고속 국도	제60호	서울~춘천 고속도로	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~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	4,952,572	서울시 강동구 강일동	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	•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• 경기도 하남시 선동, 망월동, 미사동 •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와부읍 덕소리, 월문리, 화도읍 녹촌리, 차산리, 창현리, 금남리 •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, 수입리, 노문리 •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, 천안리, 엄소리, 신천리, 창의리, 송산리, 미사리 •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•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, 추곡리, 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, 조양리	61.41
변경					4,952,341 (감231)				

2. 도시계획시설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내용 : 해당없음

3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도로구역 중복구간 제외 및 민원요청에 의한 도로구역 제외
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해당없음

5.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세목(제외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편입	제외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춘천시 동산면 조양리	892-10	도	23	23	23	장**					도로구역 제외
2	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	산67-10	도	208	208	208	남양주시					도로구역 제외

6.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(나) 열람장소

◦ 서울춘천고속도로(주) :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-5 ☎ 033-269-1100

(가) 열람기간 :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

7. 지형도면 고시(변경) 내용

구분	종류	노선명	구간	연장 (km)	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	비고
변경	고속 국도	서울~춘천 고속도로 제60호	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 남양주시 화도읍 차신리 일원	-	도로구역 중복구간 및 민원요청에 의한 도로구역 제외에 따른 고시	면적 231㎡

8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

-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
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
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